



안세회계법인 · 829-7575

세 稅 계 計 재 財 경 經 AnSwer

... 2021/11/15

전직원 회람 공지 MEMO+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

한국과 OECD국가 등 외국과의 국제거래소득의 과세방법과 원천징수여부

사업활동종류	본국에서만 과세 (선진국 협약)	타방국에서도 과세 (개도국 협약)	국내세법 원천세율 (조세조약제한세율)
사업소득	주로 본국 과세	고정사업장 귀속분	2%
선박임대소득	주로 본국 과세	고정사업장 귀속분	2%
인적용역소득	독립종속 주로 본국과세	실제 용역 제공지 과세	20%
사용료소득	조세조약특별규정	원천징수	20%(약 15% 내외)
이자소득	지급지국과세	원천징수	20%(약 15% 내외)
배당소득	지급지국과세	원천징수	20%(약 15% 내외)
부동산소득	지급지국과세	부동산소재지국	종합과세
양도소득	주로 본국 과세	특별규정	차익의 20% 또는 지급액의 10% 중 작은 금액
기타소득	지급지국과세	특별규정	20%
고정사업장	지점, 판매장소 등(단순구입, 저장, 보관은 고정사업장 아님)	좌동	좌동